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우리구에 여권발급업무가 신설되면 차량을 이용한 구청방문 민원이 급증하여 현재 주차장만으로는 구청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함.

3. 취득대상 재산현황

위 치	면 적(m ²)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토 지	건 물		
계	599.5	795.52	1,169	
당리동 317-20	161.1	192.96	220	
당리동 317-24	226.8	159.77	309	
당리동 317-31	211.6	442.79	64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 공유재산 및 물류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 외교통상부 승인공문 (여권과 - 7596호)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검토의견

이번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은

2007. 2. 23 외교통상부로부터 승인된 여권접수지방분소 개소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의 합법성, 재산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먼저, 관계법령 부문은

지방자치법 제35조①항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①항1호에 보면 중요재산의 범위를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1항에는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본 건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 범위, 방법을 준수하고 있음

다음, 재산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 측면에서는

현재의 구청사는 1978년에 건립된 건물로 그동안 상주인구와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행정수요도 늘어나 민원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만아니라, 특히, 주차시설은 주차장법과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현재도 주차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바 앞으로 여권접수업무가 시작 되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증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임

《주차장 현황》

기준면수	확보면수	부족면수	확보율
76대	37대	39대	48.7%

※ 설치기준 : 시설면적 100㎡당 1대 (구청사 시설 면적 7,627㎡)

《주차수요 예측》

현재 1일방문차량	여권분소 개소이후 예측	성수기 예측
300여대	480여대	550여대

※ 예측근거 :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사상구, 해운대구 주차수요 참고

다음,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필요한 재원 1,169백만원은 전액 교통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음

이상과 같이, 본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은

관계법령,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